2019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자체평가보고서

제출일 : 2020년 2월 28일

덕성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

목 차

제1장 서론

1.1	자체평가	목적	1
1.2	자체평가	방법	2
1.3	자체평가	위원회	2
1.4	자체평가	대상 기간	2
1.5	자체평가	영역	3
1.6	자체평가	일정	4

제2장 특수대학원 현황

2.1 교육대학원	현황	5
2.1.1 제반 사형	ţĘ	5
2.1.2 전임교원	ਰੇਂਝੇ	5
2.1.3 학생 현홍	<u>+</u> <i>د</i>	5
2.2 문화·산업대	H학원 현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7
	∦학원 현황 ······	
2.2.1 제반 사형		7

제3장 자체평가 결과

3.1	발전계획	영역	9
3.1	.1 발전계	획	9
3.1	.2 발전계	ll획 추진 실적······	10
3.2	교육여건	영역	11
3.2	<u>2</u> 1 교원 ···		·· 11
3	.2.1.1 전읻	임교원 강의 비율	·· 11
3	.2.1.2 시건	간강사 운영	·· 12
3.2	2.2 행·재	배정	·· 15

3.2.2.1	시설 및 강의실 현황	ō
3.2.2.2	행정직원 확보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5
3.2.2.3 7	재정운영의 적절성	5
3.3 교육과	정 영역	7
3.3.1 교육	육과정 운영	7
3.3.1.1	교육과정 편성	7
3.3.1.2 9	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	1
3.3.2 수업	1 ····· 23	3
3.3.2.1 2	강좌 당 학생 수	3
3.3.2.2 7	강의만족도	2
3.4 성과 일	경역 3년	ō
3.4.1 신입	입생 충원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ō
3.4.2 중도	드탈락생 비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5
3.4.3 석시	·학위 수여 현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7
3.4.4 교원	원자격 수여 및 이수증 발급 현황 ······4	1

표 목 차

〈표	1-1-1> 자체평가 관련 규정	• 1
〈표	1-3-1> 자체평가위원회 ······	· 2
〈표	1-5-1> 자체평가 영역	. 3
〈표	1-6-1> 자체평가 일정	• 4
〈표	2-1-1-1> 제반 사항	• 5
〈표	2−1−2−1〉 전임교원 현황 ······	• 5
〈표	2−1−3−1〉 학생 현황	· 6
〈표	2-2-1-1〉 제반 사항	· 7
〈표	221〉 전임교원 현황 ······	· 7
〈표	2-2-3-1〉 학생 현황 ······	· 8
〈표	3−1−1−1〉 발전계획	. 9
〈표	3-1-2-1〉 발전계획 추진 실적 ······	10
〈표	3-2-1-1-1> 전임교원 강의 비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11
〈표	3-2-1-2-1〉 시간강사 관련 규정 ······	12
〈표	3-2-1-2-2〉 최근 2개년 시간강사 강의료 ······	14
〈표	3-2-2-1-1〉 강의실 현황 ······	15
〈표	3-2-2-1〉 2019년 행정 직원 확보율 ······	16
〈표	3-2-2-3-1〉 장학금 지급 규정 ······	16
⟨표	3-2-2-3-2〉 장학금 지급 내역 ······	17
⟨표	3-3-1-1-1> 교육과정 관련 규정 ······	19
⟨표	3-3-1-1-2〉 개설 강좌 수 ······	20
⟨표	3-3-1-2-1>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	21
⟨표	3-3-1-2-2> 연구 및 현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	22
⟨표	3-3-2-1〉 학기 당 이수 학점 규정 ······	23
〈표	3-3-2-1-1〉 강좌 당 학생 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23
〈표	3-3-2-1-2〉 전공별, 강좌별 수강 학생 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24
〈표	3-3-2-2-1〉 강의 평가 문항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32
〈표	3-3-2-2-2〉 강의 만족도(강의 평가) 조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33

〈표	3-3-2-2-3〉 강의 평가 3.5이상 강좌 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〈표	3-3-2-2-4〉 강의 평가에 따른 강좌 수 비교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〈표	3-3-2-2-5〉 시간강사 위촉 제한 관련 규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〈표	3-3-2-2-6〉 강의평가 3.0 미만 강좌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	3-4-1-1〉입학 정원 규정 ······35
〈표	3-4-1-2〉 신입생 충원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〈표	3-4-2-1> 중도 탈락 관련 규정 ~~~~~ 36
〈표	3-4-2-2〉 중도 탈락 학생 비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〈표	3-4-3-1〉 석사학위 수여 규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〈표	3-4-3-2〉 석사학위 수여 현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〈표	3-4-3-3〉 논문 제출 자격 시험 규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〈표	3-4-3-4〉 외국어시험 현황 ······40
〈표	3-4-4-1> 영양교사 2급 교원자격 수여 및 전문상담교사 1급을 위한 이수증 발급 현황 41

그 림 목 차

[그림 1-2-1] 자체평가의 적	덕용	 • 2
[그림 3-2-2-1-1] 시설 현	황 ·	 15

제1장 서론

1.1 자체평가 목적

 우리 특수대학원의 자체평가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특수대학원의 현재를 자체적으로 심층 분석·평가하는 활동으로 특수대학원의 발전 계획과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스스로 진단· 규명하고, 이를 대학원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대학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.

〈표 1-1-1〉 자체평가 관련 규정

○ 고등교육법 제11조의2(평가 등)

제 11조의2(평가 등)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, 조직과 운영,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.(개정 2013.3.23.)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인정기관"이라 한다)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 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(학부·학과·전공을 포함한다)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. 다만, 의 학·치의학·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·인증을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13.3.23., 2015.12.22.〉

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,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,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.3.23.〉

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
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,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7.21.]

○ 대학원(통합)학칙 제10장제52조

제 52조(자체평가) ① 총장은 「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대학원의 교육·연 구·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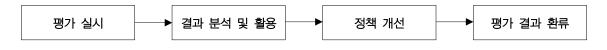
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「고등교육법」제11조의2제2항 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년도 자 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.

③ 자체평가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장 신설 2015.12.22.]

1.2 자체평가 방법

- O 정량적 평가 : 최근 2개년 간의 특수대학원 운영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정량적 인 평가 방법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- O 자체평가 적용 : 자체평가를 진행한 후 차기 대학원 운영 계획에 반영하도록 평가결과를 환류 적용한다.



[그림 1-2-1] 자체평가의 적용

1.3 자체평가위원회

O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: 특수대학원 전공주임교수 전체를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.

	71	
 · · · 7}	가	

,

〈표 1-3-1〉 자체평가위원회

1.4 자체평가 대상 기간 (최근 2개년)

○ 2018학년도 : 2018년 3월 1일 ~ 2019년 2월 28일
○ 2019학년도 : 2019년 3월 1일 ~ 2020년 2월 29일

, • 2018

2 2019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자체평가보고서

1.5 자체평가 영역

O 자체평가 영역은 발전계획, 교육여건, 교육과정, 성과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한다.

〈표 1-5-1〉 자체평가 영역

가	가	7년

1.6 자체평가 일정

〈표 1-6-1〉 자체평가 일정

2019년 12월 20일	▷ 2019년 특수대학원 자체평가 시행 및 관련 예산 배정 신청
2020년 1월 6일	▷ 자체평가위원회 구성
2020년 1월 7일 ~ 2020년 1월 30일	▷자체평가 관련 기초 자료 수집 및 기초자료 공유
2020년 1월 21일 ~ 2020년 1월 31일	▷특수대학원 만족도 조사 실시
2020년 2월 3일 ~ 2020년 2월 12일	▷세부 영역에 따른 지표별 미비 또는 보완 사항 검토
2020년 2월 14일	▷1차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완료
2020년 2월 19일	▷ 1차 자체평가 관련 회의
2020년 2월 21일 ~ 2020년 2월 25일	▷2차 자체평가 보고서 수정 및 보완
2020년 2월 26일	▷최종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완료 및 총장 보고
2020년 2월 28일	▷ 자체평가 보고서 공시